

## 2023년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창원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창 원 시 장

### ① 모집개요

- 가. 모집기간 : 2023. 3. 6.(월) ~ 3. 17.(금) 18:00
- 나. 모집인원 : 41명
- 다. 요건검토 및 서류심사 : 2023. 3. 20.(월) ~ 3. 23.(목)
- 라. 선정자 발표일 : 2023. 3. 24.(금)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알림톡 통보
- 마. 최종 선정자 대상 사전 (온라인)교육 : 2023. 3. 27.(월) \*시간 별도안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② 사업개요

- 가. 지원기간 : 2023. 4. ~ 11. (8개월)
- 나.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2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월 최대 40만 원씩, 8개월간 지원)
  - (직접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 (간접비) 식비, 교통비, 소모품구입비

\* 주류, 담배, 유흥비, 레저비, 사무실 임대료, 세금 및 기타 본인 업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이 불가함 → [자세한 지원 가능 항목은 붙임2 참조](#)
- 다. 지원방식 : 체크카드 선(先)사용 후(後)환급 / 현금 사용 불가
- 라. 지원절차

체크카드 연계계좌에 본인 예금 선(先) 입금 → 카드 사용 → 매월 말 40만원 한도 내 정산 신청 → 담당자 심사승인 → 계좌로 현금 환급(익월 15일경)

### ③ 신청자격 (모든 요건을 충족)

가. 주민등록 상 2003. 12. 31. 이전 출생한 내국인 (2003. 12. 31. 출생자 포함)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0. 3. 6. ~ 2022. 12. 6.인 자

라. 2022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단,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2회째 창업한 재창업자 지원 가능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붙임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가능 업종표 참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업종	코드	업종	코드	업종
J	정보통신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3	정보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1~712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1	건축사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1	수의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61~863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13	자영 예술가

제외 업종

사.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④ 참여 제한 (아래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대상)

가. '19~'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중도 지원제외(포기)자 포함), 참

여한 기업 ※ **생애 1회 지원, 동일사업장 공동대표는 1인 만 참여 가능**

나. 직장에 고용된 자

다. 2022년 12월 기준, 고용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

라.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마.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음란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⑤ **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changwon.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 신청경로 : 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모집신청접수 >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추가모집) > 대표자 본인 인증 후 신청

나. 제출서류 : 서식1~5는 공고 게시글의 **붙임3 파일** 다운로드

- ❖ “발급”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및 2023. 3. 6.이후 발급분 한정
- ❖ 모든 서류는 작성(발급) 후 스캔하여 (모바일 신청자는 “스캐너 앱” 이용 권고) 파일명을 **신청인 이름\_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 ⑧번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는 **접수창에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송**(✉sowon4084@korea.kr) ※ **메일 제목에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자 반드시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가산점 증빙서류는 하나의 압축폴더(zip)로 압축하여 나머지 ①~⑦번 서류와 가산점 증빙서류 압축폴더(zip)를 접수창에서 각각 업로드**
- ❖ 제한용량은 30MB(제출서류 전체)이며 **서류별 파일 형식(hwp 또는 pdf) 준수**

		서류명	파일형식
필수	①	[서식1]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pdf
	②	[서식2] 자필서약서	pdf
	③	[서식3] 사업계획서	hwp, pdf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pdf
	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2년 12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nps.or.kr)>전자민원>사업장서비스>증명원등 발급>사업장가입자명부증명 단, 대표자 1인기업은 국민연금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pdf
	⑥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홈택스(hometax.or.kr)>신청/제출>사실증명신청	pdf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년간, 2022.1.1.~12.31.)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1년간, 2022.1.1.~12.31.) ↳ 국세청홈택스(hometax.or.kr)>민원증명	pdf
	⑧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미동의 시 접수 불가	pdf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류는 뒷장에 계속)

		서류명	파일형식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자만)	①	장애인증명서 ↳ 정부24(gov.kr)>장애인증명서 검색>발급	pdf
	②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사본(또는 등록원부등본) ↳ 특허로(patent.go.kr)>조회/발급>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pdf
	③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정부24(gov.kr)>공장등록증명 검색>발급	pdf
	④	창업에듀 창업교육 수수료증 (총 2부) ↳ 창업에듀(k-startup.go.kr/edu)>패키지과정>기본형패키지>창업초기기본과정 및 창업초기심화과정을 둘 다 2022. 1. 1. 이후에 수료한 자에 가산점 부여	pdf
	⑤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창원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는 8곳 한정) 경남대BI, 마산대BI, 창원대BI, 창신대BI, 창원문성대BI, 전기연구원BI, 경남TP로봇BI,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pdf

6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가. 1차 정량평가(70점)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50명 내외 선정

- 평가항목 : 연매출액, 재산세 납부액, 창업기간, 고용직원 수
- 가산점 부여 : 창원시민, 청년(03~83년생), 장애인, 특허·실용신안 등록, 공장등록, 창업교육 수수료\*, 창업보육센터 입주\*\*

\* 2022. 1. 1. 이후 창업에듀>패키지과정>기본형패키지>'창업 초기기본', '창업초기심화' 둘 다 수료한 자에 가산점 부여

\*\* 경남대BI, 마산대BI, 창원대BI, 창신대BI, 창원문성대BI, 전기연구원BI, 경남TP로봇BI,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8곳 한정)

나. 2차 정성평가(30점) :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 합산 → 41명 최종 선정

7 유의사항

- 가. 본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의 수령으로 다른 유사 사업에서 참여배제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 신청서류의 오기재 또는 미기재, 식별 불가, 서류 누락으로 발생하는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라. 최종 선정된 후에도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참여 배제됩니다.
- 마. 사업 도중 사업장 소재지 타 지역 이전, 휴업, 폐업, 직장 취업 시 즉시 지원 중단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 분(分) 일체 지급 불가합니다.  
(전월 분(分)까지만 지급)
- 바. 신청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 휴업, 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직장 취업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 제재에 따라 즉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관련 타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 사. 기타 문의는 창원시청 미래신산업과 기술창업팀(☎055-225-2715)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 가능시간 : 평일 09:00~12:00, 13: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